

##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수행 시 준수사항

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처리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1.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착수

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착수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

### 2. 불법·과잉추심 금지

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 등 조세 법령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채권 추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 등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자료의 제공이나 답변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, 종사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자 등에게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편, 전화, 방문, 재산조사, 주소·거소 확인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활동내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리한 추심활동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내용과 조치 현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### 3. 개인정보의 보호

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납세자와 관계인 등에 관한 개인정보(과세정보, 신용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)를 타인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4. 조세채권의 확보

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5. 체납액의 납부

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나 관계인 또는 제3자로부터 체납액을 직접 현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6.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

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현황점검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

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수행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동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여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나 관련업무의 배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

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월 납부 촉구 활동 내역, 소득·재산 조사 내역, 체납자 주소·거소 확인 내역, 체납액 징수 실적, 민원 발생과 조치결과,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진행 현황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방법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수행에 관한 실무처리요령을 작성하고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7. 손해배상

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체납자나 관계인,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8. 기타

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.